

# 소비자 집단소송에 관한 인식 조사

▣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“공동소송”이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“집단소송제”는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관련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우리나라는 증권분야에만 집단소송이 가능합니다.

\* 집단소송제란,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예를 들어 기업의 횡포나 기망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,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라 할지라도 법원 판결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.

문1. 귀하께서는 집단소송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?

- 1) 잘 알고 있다
- 2) 들어 본 적은 있지만 자세한 건 잘 모른다
- 3) 잘 모른다

2. 집단소송제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- 1) 매우 필요하다
- 2) 대체로 필요하다
- 3) 별로 필요없다
- 4) 전혀 필요없다
- 5) 잘 모르겠다

3. 귀하께서는 소비자로서 제품의 하자, 서비스의 하자, 기업 간의 담합, 과장 광고 등의 기업의 횡포나 기망행위 등을 통해 피해를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?

- 1) 있다
- 2) 없다 (☞ 문7로)

4. 소비자로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해당 제조업체,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항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?

- 1) 있다
- 2) 없다 (☞ 문7로)

5. 그렇다면 소비자로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해당 제조업체,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?

- 1) 있다 (☞ 문7로)
- 2) 없다

6. 손해배상 소송을 하시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?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.

- 1) 비용이 많이 들어서
- 2) 시간이 오래 걸려서
- 3) 손해배상 금액이 적어서
- 4) 귀찮아서
- 5) 법(혹은 방법)에 대해 잘 몰라서
- 6) 소송과정이 복잡해서
- 7) 나서기 싫어서
- 8) 기타( )

7. 귀하께서는 집단소송(공동 원고를 모아서 진행하는 소송)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?

- 1) 있다
- 2) 없다

8. 만약 소비자로서 제조업체나 기업으로부터 손해를 본다면 손해액이 어느 정도일 경우, 법적 대응을 하시겠습니까?

- 1) 5만 원 미만
- 2) 5~10만 원 미만
- 3) 10~50만 원 미만
- 4) 50~100만 원 미만
- 5) 100~500만 원 미만
- 6) 500~1,000만 원 미만
- 7) 1,000만 원 이상

9. <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 자료>를 보면, 라면 제조 기업에서 2001년 5월~7월 동안 단행된 가격인상부터 2010년 2월까지 총 6차례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만약 6월 국회에서 기업의 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될 경우, 귀하께서는 소비자로 집단소송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?

- 1) 예
- 2) 아니오

10. 국회에서는 다가올 6월 3일에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해 기업의 담합과 관련하여 집단소송제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. 소비자로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- 1) 기업의 담합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
- 2) 모든 민생 관련 분야에 도입되는 것이 적절하다
- 3) 잘 모르겠다